

문서번호	시설안전팀-659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건설안전본부장
		11/20
확인	정우철	임창수
협 조		
	부장	이율하
감 사	감사실	감사필

가락몰 업무동 침수 승강기 보수용 부품 구매설치 계약변경 시행

2019. 1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팀

가락물 업무동 침수 승강기 보수용 부품 구매설치 계약변경 시행

가락물 업무동 침수 승강기 보수용 부품 구매설치 계약의 제조사 공급 지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품 구입곤란 및 납품지연으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계약코자 함

I 계약 개요

1. 계약명 : 가락물 업무동 침수 승강기 보수용 부품 구매 설치
2. 계약자 :
3. 계약기간 : 2019. 9. 25. ~ 11. 23.(총 60일)
4. 계약금액 : 금이억팔천삼백육십만원정(₩283,600,000)

II 계약 변경 시행

1. 관련 근거

- 1) 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의 2. 계약기간의 연장

2. 변경 사유

- 1)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의 부품 공급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부품 구입곤란 및 납품 지연)
- 2) 계약기간 연장 공문 검토 결과 부품 구입 및 현장 납품·설치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연장기간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3. 계약변경 내용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계약기간	'19.9.25.~ '19.11.23. (60일)	'19.9.25.~ '19.12.30. (97일)	37일 연장
계약금액	283,600,000원	좌동	

4. 지체 상금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체상금 미부과

※ 위 변경사항 외 모든 사항은 당초 계약 내용과 동일

- 붙임 1. 계약변경 합의서 1부.
2. 납기연장 요청 공문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물품계약 일반조건) 1부.
4.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1부. 끝.